
인지행동상담전문가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제도 경과조치 관련 Q&A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제도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경과조치 자격준비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아래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있는데 타 학과 석사학위도 가능한가요?

A.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따라서 타 학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회복지학’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학위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석사과정 수료가 아닌 졸업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타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증빙 서류 중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A.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인지행동치료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명시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서 인지행동치료 업무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행동치료 기반 업무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수행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과거 재직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기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퇴사한 상태 또는 기관이 없어진 상태라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지행동치료 임상경력 증빙 서류는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②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수행 확인서 ③ 인지행동치료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과거 재직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발급 받기 어려울 경우 과거 발급받아 놓은 경력증명서 제출) 과거 재직한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 업무(개인 및 집단치료)를 수행한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Q.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어떤 것인가요?

A.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지행동치료 임상경력 증빙 서류는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②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수행 확인서 ③ 인지행동치료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별지 제3호 서식), 집단 인지행동치료 요약기록지(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해주시고, 응시자가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지행동치료시 사용했던 계획서, 워크시트, 평가척도 등을 별첨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기록지 작성 시 반드시 익명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외부 반출이 금지된 서류는 접수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Q. 업무내용 확인서나 프로그램 수행 확인서 등의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 양식(별지 제2,3,4호 서식) 및 업무수행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응시자가 판단하여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활용하겠습니다.

Q. 인지행동치료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와 강의계획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강의 경험 기준은 2학기 이상, 한 학기당 대학 또는 대학원 교과목 내용의 7주 이상이 인지행동치료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 2022년 1학기, 2학기 모두 합쳐 7주 이상 인지행동치료 강의(×)

2022년 1학기 7주 이상 / 2학기 7주 이상 인지행동치료 강의(○)

경과조치기준에 제시된 강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교육이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에 해당합니다.

- 본 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교육 : 2023 인지행동치료전문가 과정 웨비나 시리즈(기본과정 4회기), 인지행동치료 워크숍(2023년 5월 20일 ~ 5월 22일 실시), 인지행동치료 심화과정 웨비나 시리즈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사전 인증한 교육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대재난 트라우마분과학회 주관 웨비나 교육 「안전기반치료」(2023년 3월 15일 실시), 「쓰기노출치료」(2023년 7월 19일 ~ 7월 20일)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의 경우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15시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의 경우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15시간 이상 + 외부학회나 협회를 통해 이수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5시간 이상 = 총 20시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